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0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44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건물분 재산세 3,027,830원(가산금 338,750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3,107,130원(가산금 325,910원 포함), 지방교육세 605,540원(가산금 67,73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건물분 재산세 6,740,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으나, 위 6,740,500원은 재산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위 각 세금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재산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위 각 세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1. 이 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redacted] [redacted]군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6층 호텔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각대금 451,610,000원에 낙찰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호텔'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건물분 재산세 3,027,830원(가산금 338,750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3,107,130원(가산금 325,910원 포함), 지방교육세 605,540원(가산금 67,730원 포함)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 7. 10. 납세고지서를 당시 피고의 전산상 등록된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9호증, 을 제1, 2,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4. 7. 10.경 수령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위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0

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그리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당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원고의 주소지인 [redacted]구 ****'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가 2014. 9. 11. [redacted]군 C 외 2필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위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9. 22. 원고 본인이 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일인 2014. 7. 10.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4. 7. 10.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한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0

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